

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제3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(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)에 기재된 <u>수하인</u></p> <p>다. ~ 라. (생략)</p> <p>마. 송품장상의 <u>수하인</u>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</p> <p>바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물품수신인</u></p> <p>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<u>물품수신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8. ~ 14. (생략)	8. ~ 14. (현행과 같음)	
<p>제7조(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<u>입항</u>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<u>입항</u>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도착</u>----- ----- ----- <u>도착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(입항전 수입신고) 제3항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</p>
<p>제13조(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 ~ 8. (생략)</p> <p>9.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·신고수리 전 반출승인물품·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<u>선(기)용품</u> 수입물품(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13,17,18,20,22,23,2</p>	<p>제13조(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----- <u>선박(항공기)용품</u> ----- -----,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4,25,29,30,33에 해당하는 물품) 10. ~ 16. (생략) ② ~ ③ (생략) ④ 제2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「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의거 매분기 익월말까지 “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[별표 10]”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. ⑤ ~ ⑦ (생략)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수리후 전자서류 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<u>익월 10일</u>까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----- 10. ~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다음 달 말까지</u> ----- -----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달</u> ----- -----.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15조(수입신고서 제출서류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</p>	<p>제15조(수입신고서 제출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3. 선하증권(B/L)<u>부분</u>이나 항공화물운송장(AWB)<u>부분</u></p> <p>4. ~ 9. (생략)</p> <p>10. 할당·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<u>중축·치어</u>의 번식·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(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)</p> <p>11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 대상물품</u></p> <p>다. ~ 라. (생략)</p> <p>마. <u>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</u></p>	<p>3. 선하증권(B/L)<u>사본</u>이나 항공화물운송장(AWB)<u>사본</u></p> <p>4. ~ 9. (생략)</p> <p>10. ----- -- <u>중축(씨가축)·치어(어린 물고기)</u>----- ----- -----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</u></p> <p>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</u>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<u>다른 수출입물품의 포장물품</u> 바. ~ 차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5. ~ 9.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할당·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<u>종축·치어의 번식·양식용 해당세율 증</u> <u>명서류</u> ⑤ (생략)</p>	<p><u>품</u> 바. ~ 차. (현행과 같음) <u>카.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</u> <u>물품</u> <u>타.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</u> 5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종축(씨가축)·치어(어린 물고기)</u>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18조(신고의 취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<u>신청(승인)</u> 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p>	<p>제18조(신고의 취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<u>승인(신청)</u> 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p>	<p>○ 오타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해야 하며,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 ③ ~ ④ (생략)</p>	<p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해야 하며,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9조(신고의 각하) ① (생략)</p> <p>1. <u>사위</u>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</p> <p>2. <u>멸각</u>, 폐기, 공매·경매낙찰, 몰수확정,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</p> <p>3. ~ 5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신고의 각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거짓이나 그밖의</u> ----- -----</p> <p>2. <u>멸각</u>, 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관세법상 ‘멸각’이 ‘폐기’로 정비됨</p>
<p>제20조(가격신고) 제15조제1항제2호의 가격 신고서의 서식·기재요령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「<u>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</u>」에서 정하는</p>	<p>제20조(가격신고) ----- ----- ----- 「<u>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-----</p>	<p>○ 개정 고시명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바에 따른다.</p>	<p>--.</p>	
<p>제23조(분석의뢰) ①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,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⑦ 수입부서의 장은 수리전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는 E-mail, FAX,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(분석의뢰) ① ----- ----- ----- 기술 이 필요한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전 자우편, 팩스, ----- -----.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24조(사전세액심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(세관보관분) 좌측 하단에 [별</p>	<p>제24조(사전세액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</p> <p>2. 법에 따른 의무사항(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3.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</p> <p>4.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·오인표시물품</p> <p>5.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</p> <p>6.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</p>	<p><u>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</u></p> <p><u>2. 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</u></p> <p><u>3. 법에 따른 의무사항(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</u></p> <p><u>4.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</u></p> <p><u>5.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·불량·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</u></p> <p><u>6.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</u></p>	<p>용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② ~ ④ (생략)</p>	<p>7.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34조(임시개청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내에 <u>적하목록</u>(하역신고 포함)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4조(임시개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<p>제35조(신고수리) ① (생략)</p> <p>1.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은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<u>적하목록</u> 심사가 완료된 때. 다만, 수입신고전에 <u>적하목록</u>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35조(신고수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<u>적하목록</u> 심사완료 일. 다만, 수입신고전에 <u>적하목록</u> 심사완료 된 때에는 수입신고일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37조(신고필증교부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99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 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 하여 신고하는 경우 : 세관특수청인을 전자 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 면에 [별표 3]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<u>인장</u>을 찍어서 교부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7조(신고필증교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40조(수입신고서 등 이관) ① 수입과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리일의 다음 날 수리내역 전산출력 리스트를 심사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. 다만,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수입신고 건은 신고서(보관용)에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인계해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40조(수입신고서 등 이관) ① ----- ----- ----- 대상물품 중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수입신고 건은 신고서(보관용)에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과장에게 인계해야 하며, 그 외의 수입신고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심사과장에게 자동으로 인계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실제 업무처리와 맞지 않는 조문 정비</p>
<p>제43조(전자송달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입신고필증 2. 보완요구서 3. 「<u>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. 기타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	<p>제43조(전자송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입신고필증 2. 보완요구서 3. 「<u>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. 기타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	<p>○ 고시 명칭에 맞게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경우에는 해당 서류	경우에는 해당 서류	
<p>제55조(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)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부과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<u>500만원</u>을 초과하는 물품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제55조(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)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1,000만원</u>을 초과하는 물품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'00년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한도액 증가</p>
<p>제61조(통합납부서 발행 등) ①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<u>익일</u>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. 다만,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1조(통합납부서 발행 등) ① ----- ----- <u>다음 날</u>부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제68조(합산과세 기준) (생략)	제68조(합산과세 기준) (현행과 같음)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1. (생략)</p> <p>2.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 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3.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 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3.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</p>	<p>○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되는 불합리한 상황 해소</p>
<p>제72조(면세신청서 제출생략) ① (생략)</p> <p>1. 외교관 면세대상물품(법 제88조)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2조(면세신청서 제출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외교관 면세대상물품(법 제88조, <u>다만,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 제한 물품은 제외</u>)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면세신청서 제출 생략대상 명확화</p>
<p>제76조(신고수리조건) 세관장은 고철로서 통관허용시에는 신고필증에 “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철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</p>	<p>제76조(신고수리조건)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수입신고필증에 표출되는 문구로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에 사용하는 때에는 <u>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</u>”이라는 표시를 한다.</p>	<p>----- <u>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될</u>”-----</p>	
<p>제4절 <u>외국무역선</u>에서 수거된 폐유 제94조(적용대상) 이 절은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7조에 따라 <u>외국무역선</u>에서 수거한 폐유 중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폐유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4절 <u>국제</u>----- 제94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<u>국제</u>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<p>제95조(용어의 정의)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폐유"라 함은 <u>외국무역선</u>에서 발생한 다음 각목의 물품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마.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<u>외국무역선</u>에서 발생한 기타 폐유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폐기물처리업자”라 함은 「폐기물관리법」 <u>제26조</u>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이</p>	<p>제95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"폐유"라 함은 <u>국제무역선</u>에서 발생한 다음 각목의 물품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<u>국제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 <u>제25조</u>-----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 <p>○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시·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	
<p>제97조(신고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견적서(판매물품의 경우), <u>지불증빙서류</u> (실제<u>지불가격</u>의 경우)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③ 신고품명은 “폐유”로 기재하고, 규격은 “선저폐유, 슬러지, <u>윤활유 폐유</u>, 유창청소 폐유, 기타 폐유”로 제95조제1호 각목의 용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. ④ ~ ⑤ (생략)</p>	<p>제97조(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, <u>지급</u>----- (---<u>지급</u>-----) ----- ③ ----- ----- <u>폐윤활유</u>, ----- ----- -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○ 고시 제95조 용어 정의와 일치 되도록 수정</p>
<p>제103조(선박·항공기) ① (생략) ② 선박·항공기(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선박·항공기를 포함한다)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·항공기가 우리나라</p>	<p>제103조(선박·항공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·항공기가 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<u>외국</u> 무역선(기)에 해당되는 경우(원양어선을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국제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05조(연속공급물품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연속공급물품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<u>익월</u> 수입예정수량에 대해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해야 한다.</p>	<p>제105조(연속공급물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다음 달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112조(반입명령 대상물품의 확인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, 반입명령인은 <u>반입의무자</u>는</p>	<p>제112조(반입명령 대상물품의 확인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반입의무자</u>에</p>	<p>○ 오타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,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.</p>	<p>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
<p>제122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신용담보업체”라 함은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특례법」 제6조제2항 및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7. “잔존유”라 함은 법 제144조 및 영 제167조에 따라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</p>	<p>제12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「<u>환특법</u>」 ----- ----- <u>고시</u>」----- -----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국제</u>-----</p>	<p>○ 약어로 수정 및 구분기호 추가</p> 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는 경우 <u>외국</u>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과세 대상 연료유의 잔량을 말한다.</p>	<p>----- <u>국제</u>----- -----.</p>	
<p>제126조(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) ① (생략)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(<u>승인</u>)서(별지 제25호 서식)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(<u>승인</u>)서(별지 제25호 서식)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.</p>	<p>제126조(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(<u>결과통보</u>)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(<u>결과통보</u>)----- -----.</p>	<p>○ 오타 수정</p>
<p>제127조(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27조(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물품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즉시반출업체(물품) 지정사항 변경신고(통지)서(별지 제24호 서식)에 담당자의 <u>고무인</u>(별표 8)을 찍어서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장</u> ----- -----.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128조(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) ① ~ ③ (생략) ④ 관할지세관장은 <u>제2항</u>에 따라 즉시반출업체나 즉시반출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해야 한다.</p>	<p>제128조(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지정취소 통지대상 명확화</p>
<p>제129조(반출신고의 요건)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3. 해당물품에 대한 <u>적하목록</u>정보가 선사(항공사)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</p>	<p>제129조(반출신고의 요건)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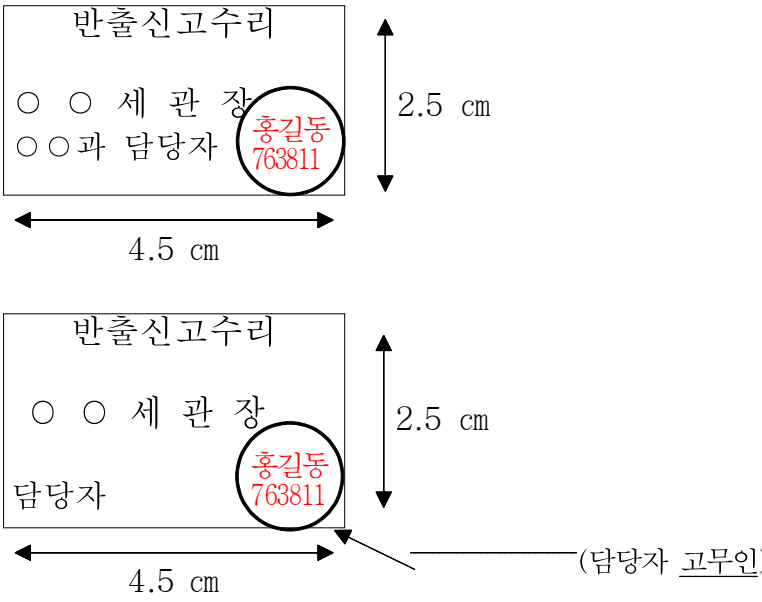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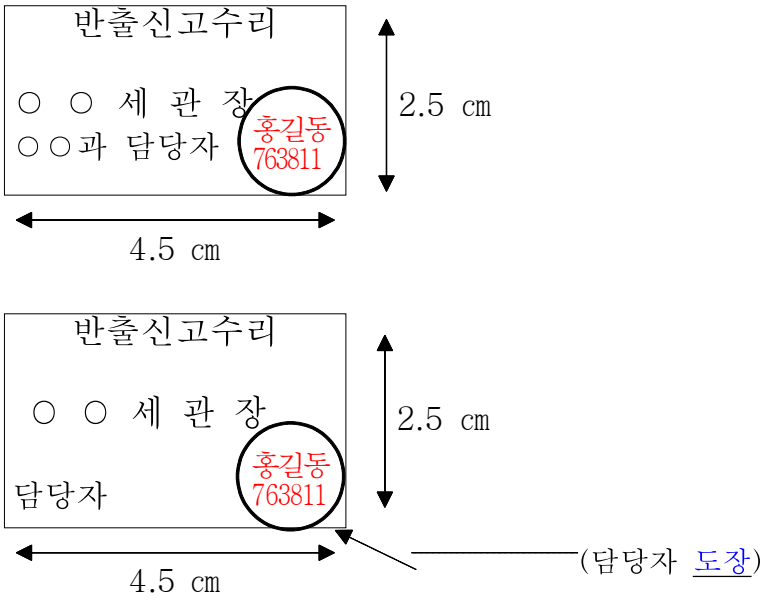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어야 한다. 다만,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과 <u>외국무역기</u>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는 제외한다.</p>	<p>----- ----- <u>국제</u> ----- -----.</p>	
<p>제130조(반출신고의 시기) ① 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<u>적하목록</u>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적하목록</u>이 없는 잉여물품과 잔존유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외국무역기</u>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 경우: 항공사가 내항기로의 전환을 신청한 이후 승인 전까지 반출신고 	<p>제130조(반출신고의 시기) ① -----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국제</u> ----- ----- 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<p>제131조(반출신고)</p>	<p>제131조(반출신고)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① ~ ③ (생략) ④ <u>외국무역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	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국제</u> ----- ----- ----- -----	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
제132조(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) ① ~ ③ (생략)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내용을 전산등록하고, 제1항의 신청서에 담당자의 <u>고무인</u> 을 찍어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	제132조(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도 ----- <u>장</u> -----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제133조(반출신고심사)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 1. ~ 3. (생략) 4. 신고내용과 <u>적하목록정보</u> 와의 일치여부 5. ~ 6. (생략)	제133조(반출신고심사)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 5. ~ 6. (현행과 같음)	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134조(반출신고수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[별표 2]의 반출신고수리인과 [별표 3]의 처리담당자의 <u>인장</u>을 찍어서 신고인에게 교부한다.</p>	<p>제134조(반출신고수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도장</u> ----- -----.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135조(물품반출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항공사는 <u>외국무역기</u>에 적재된 잔존유를 반출하려는 때에는 잔존유 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.</p>	<p>제135조(물품반출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국제</u> ----- ----- ----- -.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<p>제139조(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안내를 양수자에게 <u>FAX</u> 또는 유선 등으로 즉시 전달해야 한다.</p>	<p>제139조(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팩스</u> ----- -----.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140조(수입신고 미이행 관리)</p>	<p>제140조(수입신고 미이행 관리)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① (생략)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과 제13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인이나 즉시반출업체에게 통지(전화 또는 <u>FAX</u>)해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팩스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<p>제143조(자체조사 및 <u>고발의뢰</u>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」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<u>고발의뢰</u>를 해야 한다.</p>	<p>제143조(자체조사 및 <u>조사</u>의뢰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조사</u>----- --.</p>	<p>○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('21.2.1)에 따른 용어 수정</p>
<p><<u>신설</u>></p>	<p>부칙 (관세청 고시 제2022-00호, '22.00.00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○ 부칙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	<p>제2조(적용례) 제15조제2항, 별지 제1-2호 수입신고서 신규 추가 항목, 별지 제5호·제8호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	
[별표 1] 사전세액심사필 <u>고무인</u>	[별표 1] 사전세액심사필 <u>도장</u>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[별표 2] 반출신고수리 <u>인</u>	[별표 2] 반출신고수리 <u>도장</u>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		
[별표 3] 처리담당자 <u>고무인</u> (제37조제1항 관련)	[별표 3] 처리담당자 <u>도장</u> (제37조제1항 관련)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[별표 4] 납부(고지)번호 체계 6. 세외수입 - 67 : <u>설영특허수수료</u>	[별표 4] 납부(고지)번호 체계 6. 세외수입 - 67 : <u>설치·운영특허수수료</u>	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문구 정비
[별표 11]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(제67조 관련)	[별표 11]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(제67조 관련)	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VIAGRA 등 오·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6병 의약품 총6병(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 생약 (한약) 제제 모발재생제, 제조환, 다편환, 인삼봉황, 소염제, 구심환, 소갈환, 활락환, 삼편환, 백봉환, 우황청심환 100ml×2병, 8g入×20병, 10T×3갑, 50T×3병, 400T×3병, 30T×3병, 10알, 30알 기호 물품 향수 60ml			VIAGRA 등 오·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6병 의약품 총6병(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 생약 (한약) 제제 모발재생제, 제조환, 다편환, 인삼봉황, 소염제, 구심환, 소갈환, 활락환, 삼편환, 백봉환, 우황청심환 100ml×2병, 8g入×20병, 10T×3갑, 50T×3병, 400T×3병, 30T×3병, 10알, 30알 기호 물품 향수 60ml			○ 식약처 질의회신 내용 및 업무처리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처방전 발급주체 명확화 ○ 향수 부피,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환산용량이 60ml 이내이면 자가사용 인정
(별지 제1-2호)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. 일반사항 바. 통계부호의 추가, 삭제, 변경사항이 <u>시달</u>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. <u><신 설></u>			(별지 제1-2호)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. 일반사항 바. ----- <u>통보</u> ----- ----- ----- <u>너.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</u>		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○ 세액계산 시스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
	<p>(<u>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부</u> <u>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</u>) <u>여</u> <u>러 대를 같은 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</u> <u>품별이 아닌 신고란별로 한도가 적용되어</u> <u>개별소비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으</u> <u>므로 물품별로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	<p>미비점 보완</p>								
<p>4. 작성방법</p> <p>④B/L(AWB)번호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879 936 1222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174 879 640 940">작성요령</th> <th data-bbox="640 879 936 940"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74 940 640 1222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ouse단위의 B/L(AWB)번호 및 분할 수입신고 여부 -Master B/L(AWB)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/L(AWB)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/L(AWB)번호를 기재(적하목록상의 House단위 B/L(AWB)번호와 일치하여야 함) -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/L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함 </td> <td data-bbox="640 940 936 1222"> <p>DBSC96100123AB01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⑤화물관리번호</p>	작성요령	작성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ouse단위의 B/L(AWB)번호 및 분할 수입신고 여부 -Master B/L(AWB)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/L(AWB)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/L(AWB)번호를 기재(적하목록상의 House단위 B/L(AWB)번호와 일치하여야 함) -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/L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함 	<p>DBSC96100123AB01</p>	<p>4. 작성방법</p> <p>④B/L(AWB)번호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879 1720 1222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58 879 1424 940">작성요령</th> <th data-bbox="1424 879 1720 940"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58 940 1424 1222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ouse단위의 B/L(AWB)번호 및 분할 수입신고 여부 -Master B/L(AWB)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/L(AWB)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/L(AWB)번호를 기재(<u>적재화물목록</u>상의 House단위 B/L(AWB)번호와 일치하여야 함) -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/L번호가 없는 경우 <u>빈칸</u>으로 함 </td> <td data-bbox="1424 940 1720 1222"> <p>DBSC96100123AB01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⑤화물관리번호</p>	작성요령	작성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ouse단위의 B/L(AWB)번호 및 분할 수입신고 여부 -Master B/L(AWB)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/L(AWB)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/L(AWB)번호를 기재(<u>적재화물목록</u>상의 House단위 B/L(AWB)번호와 일치하여야 함) -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/L번호가 없는 경우 <u>빈칸</u>으로 함 	<p>DBSC96100123AB01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</p>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ouse단위의 B/L(AWB)번호 및 분할 수입신고 여부 -Master B/L(AWB)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/L(AWB)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/L(AWB)번호를 기재(적하목록상의 House단위 B/L(AWB)번호와 일치하여야 함) -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/L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함 	<p>DBSC96100123AB01</p>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ouse단위의 B/L(AWB)번호 및 분할 수입신고 여부 -Master B/L(AWB)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/L(AWB)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/L(AWB)번호를 기재(<u>적재화물목록</u>상의 House단위 B/L(AWB)번호와 일치하여야 함) -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/L번호가 없는 경우 <u>빈칸</u>으로 함 	<p>DBSC96100123AB01</p>									

현행		개정안		개정사유
작성요령	작성예	작성요령	작성예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 - 적하목록 관리번호(Manifest Reference No) - Master B/L(AWB) Sequence No. 4자리 기재 - House B/L(AWB) Sequence No. 4자리 기재 * 휴대품은 휴대품유치서상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며,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"NO"로 기재 	전자문서:01KE0766SS200100003 서류:01KE0766SS2-0010-00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재화물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 - 적재화물목록 관리번호(Manifest Reference No) - Master B/L(AWB) Sequence No. 4자리 기재 - House B/L(AWB) Sequence No. 4자리 기재 * 휴대품은 휴대품유치서상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며,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"NO"로 기재 	전자문서:01KE0766SS200100003 서류:01KE0766SS2-0010-0003	
⑩ 신고인		⑩ 신고인		
작성요령	작성예	작성요령	작성예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인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- 관세사인 경우 신고인상호와 관세사 성명 기재 - 자가통관업체인 경우 신고인 상호와 대표자 성명 기재 - 기타 개인의 경우 성명만 기재 	유한관세사법인 홍길동 갑을상사(주) 관세사 홍길서 이도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인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- 관세사인 경우 신고인상호와 관세사 성명 기재 - 자가통관업체인 경우 신고인 상호와 대표자 성명 기재 - 기타 개인의 경우 성명만 기재 	유한관세사법인 홍길동 갑을상사(주) 관세사 홍길서 이도령	
⑬ 운송주선인		⑬ 운송주선인		
작성요령	작성예	작성요령	작성예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송주선인(포워더) 관련사항 기재 - 운송주선인 상호 기재 - 세관에 등록된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호 기재 * 가격신고(운임)와 직접 관련있는 운송주선인 기재 원칙 - 적하목록 B/L TYPE이 "S" 인 경우에는 상호를 "NO" 로 기재 - 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 부호는 "XX XX" 로 기재 	- 세관무역(주) - ABC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송주선인(포워더) 관련사항 기재 - 운송주선인 상호 기재 - 세관에 등록된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호 기재 * 가격신고(운임)와 직접 관련있는 운송주선인 기재 원칙 - 적재화물목록 B/L TYPE이 "S" 인 경우에는 상호를 "NO" 로 기재 - 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 부호는 "XX XX" 로 기재 	- 세관무역(주) - ABCD	

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

○ 잘못된 작성예시 정정

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조문 정비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③⑨과세가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338 936 544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-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(CIF기준 USD) (소수점이하 절상) -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(소수점 이하 절사)</td> <td>- \$8,150.01 = \$8,151 - ₩1,235.99 = ₩1,23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④⑩순중량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625 936 932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-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당해 물품의 중량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- 중량단위가 KG(I.C 등)인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 ○ 단위는 KG으로 기재</td> <td>99999.9, 99999.99, 99999.999 KG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④①수량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1018 936 1284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-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 하지 않음(중량만 기재) -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○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수량단위를 기재 (U외 10개)</td> <td>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⑤②세액</p>	작성요령	작성예	○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-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(CIF기준 USD) (소수점이하 절상) -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(소수점 이하 절사)	- \$8,150.01 = \$8,151 - ₩1,235.99 = ₩1,235	작성요령	작성예	○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-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당해 물품의 중량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- 중량단위가 KG(I.C 등)인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 ○ 단위는 KG으로 기재	99999.9, 99999.99, 99999.999 KG	작성요령	작성예	○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-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 하지 않음(중량만 기재) -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○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수량단위를 기재 (U외 10개)	30	<p>③⑨과세가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338 1720 544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-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(CIF기준 USD) (소수점이하 <u>첫째자리에서 올림</u>) -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(소수점 이하 <u>제외</u>)</td> <td>- \$8,150.01 = \$8,151 - ₩1,235.99 = ₩1,23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④⑩순중량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625 1720 932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-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당해 물품의 중량단 위로 환산하여 기재 - 중량단위가 KG(I.C 등)인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 ○ 단위는 KG으로 기재</td> <td>99999.9, 99999.99, 99999.999 KG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④①수량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1018 1720 1284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-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 하지 않음(중량만 기재) -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○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수량단위를 기재 (U 외 10개)</td> <td>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⑤②세액</p>	작성요령	작성예	○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-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(CIF기준 USD) (소수점이하 <u>첫째자리에서 올림</u>) -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(소수점 이하 <u>제외</u>)	- \$8,150.01 = \$8,151 - ₩1,235.99 = ₩1,235	작성요령	작성예	○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-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당해 물품의 중량단 위로 환산하여 기재 - 중량단위가 KG(I.C 등)인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 ○ 단위는 KG으로 기재	99999.9, 99999.99, 99999.999 KG	작성요령	작성예	○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-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 하지 않음(중량만 기재) -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○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수량단위를 기재 (U 외 10개)	30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-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(CIF기준 USD) (소수점이하 절상) -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(소수점 이하 절사)	- \$8,150.01 = \$8,151 - ₩1,235.99 = ₩1,235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-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당해 물품의 중량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- 중량단위가 KG(I.C 등)인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 ○ 단위는 KG으로 기재	99999.9, 99999.99, 99999.999 KG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-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 하지 않음(중량만 기재) -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○ 관세율표에 <u>계기된</u> 수량단위를 기재 (U외 10개)	30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-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(CIF기준 USD) (소수점이하 <u>첫째자리에서 올림</u>) -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(소수점 이하 <u>제외</u>)	- \$8,150.01 = \$8,151 - ₩1,235.99 = ₩1,235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-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당해 물품의 중량단 위로 환산하여 기재 - 중량단위가 KG(I.C 등)인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 ○ 단위는 KG으로 기재	99999.9, 99999.99, 99999.999 KG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-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 하지 않음(중량만 기재) -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○ 관세율표에 <u>다른</u> 수량단위를 기재 (U 외 10개)	30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			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-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 -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세액을 기재 -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용 신고 또는 반입신고시 산출된 세액을 기재</td> <td>999,999,999,99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작성요령	작성예	○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-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 -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세액을 기재 -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용 신고 또는 반입신고시 산출된 세액을 기재	999,999,999,999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-원 미만은 제외하고 기재 -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세액을 기재 -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용 신고 또는 반입신고시 산출된 세액을 기재</td> <td>999,999,999,99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작성요령	작성예	○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-원 미만은 제외하고 기재 -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세액을 기재 -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용 신고 또는 반입신고시 산출된 세액을 기재	999,999,999,999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항 목</th> <th rowspan="2">TYPE</th> <th rowspan="2">SIZE</th> <th colspan="2">조건</th> <th rowspan="2">서류/ 전자문서</th> </tr> <tr> <th>일반</th> <th>간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●전자상거래유형</td> <td>AN</td> <td>1</td> <td>C</td> <td>C</td> <td>전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항 목	TYPE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일반	간이	●전자상거래유형	AN	1	C	C	전자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특송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유형, 해외판매자, 구매·배송대행업자, 판매중개자, 주문번호 신고항목 추가</p>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-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 -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세액을 기재 -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용 신고 또는 반입신고시 산출된 세액을 기재	999,999,999,99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-원 미만은 제외하고 기재 -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세액을 기재 -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용 신고 또는 반입신고시 산출된 세액을 기재	999,999,999,99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 목	TYPE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일반	간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●전자상거래유형	AN	1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 설</p>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해외직접구매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부호를 기재 -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 : A - 구매대행 : B - 배송대행 : C - 파악불가 : Z</td> <td>- A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작성요령	작성예	○ 해외직접구매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부호를 기재 -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 : A - 구매대행 : B - 배송대행 : C - 파악불가 : Z	- A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항 목</th> <th rowspan="2">TYPE</th> <th rowspan="2">SIZE</th> <th colspan="2">조건</th> <th rowspan="2">서류/ 전자문서</th> </tr> <tr> <th>일반</th> <th>간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●해외판매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 부호</td> <td>AN</td> <td>9</td> <td>C</td> <td>C</td> <td>전자</td> </tr> <tr> <td>- 상호</td> <td>AN..</td> <td>60</td> <td>C</td> <td>C</td> <td>전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항 목	TYPE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일반	간이	●해외판매자						- 부호	AN	9	C	C	전자	- 상호	AN..	60	C	C	전자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해외직접구매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부호를 기재 -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 : A - 구매대행 : B - 배송대행 : C - 파악불가 : Z	- A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 목	TYPE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일반	간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●해외판매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부호	AN	9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상호	AN..	60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284 1720 56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58 284 1422 335">작성요령</th> <th data-bbox="1422 284 1720 335"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58 335 1422 566"> ○ 해외판매자 관련사항 기재 -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) 또는 상호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 * 「●전자상거래 유형」 항목이 'A', 'B', 'C' 인 경우 기재 </td> <td data-bbox="1422 335 1720 566"> - A12200001 - 아마존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592 1720 818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58 592 1196 683" rowspan="2">항목</th> <th data-bbox="1196 592 1301 683" rowspan="2">TYPE</th> <th data-bbox="1301 592 1406 683" rowspan="2">SIZE</th> <th colspan="2" data-bbox="1406 592 1608 635">조건</th> <th data-bbox="1608 592 1720 683" rowspan="2">서류/전자문서</th> </tr> <tr> <th data-bbox="1406 635 1512 683">일반</th> <th data-bbox="1512 635 1608 683">간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58 683 1196 726">●구매·배송대행업자</td> <td data-bbox="1196 683 1301 726"></td> <td data-bbox="1301 683 1406 726"></td> <td data-bbox="1406 683 1512 726"></td> <td data-bbox="1512 683 1608 726"></td> <td data-bbox="1608 683 1720 726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58 726 1196 769">- 부호</td> <td data-bbox="1196 726 1301 769">AN</td> <td data-bbox="1301 726 1406 769">9</td> <td data-bbox="1406 726 1512 769">C</td> <td data-bbox="1512 726 1608 769">C</td> <td data-bbox="1608 726 1720 769">전자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58 769 1196 818">- 상호</td> <td data-bbox="1196 769 1301 818">AN..</td> <td data-bbox="1301 769 1406 818">60</td> <td data-bbox="1406 769 1512 818">C</td> <td data-bbox="1512 769 1608 818">C</td> <td data-bbox="1608 769 1720 818">전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844 1720 1173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58 844 1422 895">작성요령</th> <th data-bbox="1422 844 1720 895"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58 895 1422 1173"> ○ 구매·배송대행자 관련사항 기재 -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와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은 경우) 또는 상호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 * 「●전자상거래 유형」 항목이 'B', 'C' 인 경우 기재 </td> <td data-bbox="1422 895 1720 1173"> - B12200001 - 온라인마켓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작성요령	작성예	○ 해외판매자 관련사항 기재 -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) 또는 상호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 * 「●전자상거래 유형」 항목이 'A', 'B', 'C' 인 경우 기재	- A12200001 - 아마존	항목	TYPE	SIZE	조건		서류/전자문서	일반	간이	●구매·배송대행업자						- 부호	AN	9	C	C	전자	- 상호	AN..	60	C	C	전자	작성요령	작성예	○ 구매·배송대행자 관련사항 기재 -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와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은 경우) 또는 상호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 * 「●전자상거래 유형」 항목이 'B', 'C' 인 경우 기재	- B12200001 - 온라인마켓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해외판매자 관련사항 기재 -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) 또는 상호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 * 「●전자상거래 유형」 항목이 'A', 'B', 'C' 인 경우 기재	- A12200001 - 아마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목	TYPE	SIZE	조건		서류/전자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일반	간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●구매·배송대행업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부호	AN	9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상호	AN..	60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구매·배송대행자 관련사항 기재 -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와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은 경우) 또는 상호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 * 「●전자상거래 유형」 항목이 'B', 'C' 인 경우 기재	- B12200001 - 온라인마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20%;">항 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TYPE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SIZE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20%;">조건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서류/ 전자문서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일반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간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6">● 판매중개자</td> </tr> <tr> <td>- 부호</td> <td>AN</td> <td>9</td> <td>C</td> <td>C</td> <td>전자</td> </tr> <tr> <td>- 상호</td> <td>AN..</td> <td>60</td> <td>C</td> <td>C</td> <td>전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60%;">작성요령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사이버몰 운영자가 판매자가 아닌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(통신판매중개자)의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) 또는 상호 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</td> <td>- D12200001 - 11번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20%;">항 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TYPE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SIZE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20%;">조건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서류/ 전자문서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일반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간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6">● 주문번호</td> </tr> <tr> <td>- 부호</td> <td>AN..</td> <td>35</td> <td>C</td> <td>C</td> <td>전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60%;">작성요령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사이버몰에서 주문할 때 생성 관리되는 주문번호를 기재 묶음배송 등으로 2개 이상일 경우 구분 기재 ※ 거래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기재</td> <td>- 1234567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 목	TYPE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일반	간이	● 판매중개자						- 부호	AN	9	C	C	전자	- 상호	AN..	60	C	C	전자	작성요령	작성예	○ 사이버몰 운영자가 판매자가 아닌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(통신판매중개자)의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) 또는 상호 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	- D12200001 - 11번가	항 목	TYPE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일반	간이	● 주문번호						- 부호	AN..	35	C	C	전자	작성요령	작성예	○ 사이버몰에서 주문할 때 생성 관리되는 주문번호를 기재 묶음배송 등으로 2개 이상일 경우 구분 기재 ※ 거래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기재	- 12345678	
항 목	TYPE			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일반	간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● 판매중개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부호	AN	9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상호	AN..	60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사이버몰 운영자가 판매자가 아닌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(통신판매중개자)의 고유부호(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부호가 있는 경우) 또는 상호 명(고유부호가 없는 경우)을 기재	- D12200001 - 11번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 목	TYPE	SIZE	조건		서류/ 전자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일반	간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● 주문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부호	AN..	35	C	C	전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사이버몰에서 주문할 때 생성 관리되는 주문번호를 기재 묶음배송 등으로 2개 이상일 경우 구분 기재 ※ 거래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기재	- 1234567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별지 제5호 서식)	(별지 제5호 서식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산세 등 산출근거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2쪽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가산세 종류명</th> <th>관련 법령</th> <th>과세표준</th> <th>산출근거(비율)</th> <th>가산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14">가산소득</td> <td rowspan="7">일반</td> <td>관세</td> <td>관세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계별소비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주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통에너지환경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육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농특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7">우등(우정)</td> <td>관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계별소비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주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통에너지환경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육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농특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10">납부지연</td> <td rowspan="10">관세</td> <td>관세</td> <td>관세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계별소비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주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통에너지환경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육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농특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관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계별소비세</td> <td>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14">미납소득</td> <td rowspan="7">일반</td> <td>관세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계별소비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주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통에너지환경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육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농특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7">우정</td> <td>관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계별소비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주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통에너지환경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교육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농특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신고지연</td> <td>일반 품목</td> <td>관세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일당관세 품목</td> <td>관세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수입신고불이행</td> <td>관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재수출신고불이행</td> <td>관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과다납부</td> <td>류다납</td> <td>관세·내국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미사납</td> <td>관세·내국세</td> <td>관</td> <td>관세지역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tr> <td>과다한금 가산금</td> <td>관세 등</td> <td>관</td> <td>과다한금·경과일수외의 (1%)</td> <td>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 ※ 납부지연가산세 이차율 적용기간(관세법 시행령 제39조) -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: 22/100,000 - 2019년 2월 12일 - 2022년 2월 14일부치의 기간 : 25/100,000 - 2019년 2월 11일 이전부치의 기간 : 3/10,000 </p>	가산세 종류명	관련 법령	과세표준	산출근거(비율)	가산세	가산소득	일반	관세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우등(우정)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납부지연	관세	관세	관세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부가가치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계별소비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주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교통에너지환경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교육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농특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관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부가가치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계별소비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미납소득	일반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우정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신고지연	일반 품목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일당관세 품목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합계			관	수입신고불이행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재수출신고불이행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과다납부	류다납	관세·내국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미사납	관세·내국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과다한금 가산금	관세 등	관	과다한금·경과일수외의 (1%)	관	<p>○ 납세자에게 가산세 산출근거 상세 내역 안내 필요</p>
가산세 종류명	관련 법령	과세표준	산출근거(비율)	가산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산소득	일반	관세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우등(우정)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납부지연	관세	관세	관세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부가가치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별소비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통에너지환경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육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농특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관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부가가치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별소비세	부족·미납지역·경과일수 (1일외)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납소득	일반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우정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부가가치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별소비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통에너지환경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육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농특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고지연	일반 품목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당관세 품목	관세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계		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입신고불이행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수출신고불이행	관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다납부	류다납	관세·내국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미사납	관세·내국세	관	관세지역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다한금 가산금	관세 등	관	과다한금·경과일수외의 (1%)	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

(별지 제8호 서식)

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(납부자용)

(1쪽)

납부연수증서[납부자용]		납부기간	년	월	일
영계번호	증세합산금 일반항목	납부자			
영계번호		납부부서			
수입징수증 계좌번호	납부서	납기내 납기후			
*수납기관에서는 추의 부를 전 안의 내용을 즉시 정상입력하여 수입징수증서에 전자발사함으로써 불지급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수입신고번호		수입징수증서			
납부자	(대표자)성명	성명	성명		
주 소	주 소	주 소	주 소		
납부세	고율세	고율에너지충당세	개발소비세		
주 세	고율세	고율세	부가가치세		
납어음복합세	가산세(불응이자)	가 산 세	가 산 세		
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	
납부시 아래 <안내할음>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취급원을 통하여 접수합니다.		영수인	
수입징수증		영수인	년	월	일

- <안내할음>
- 취급처를 납부기관까지 송부, 영수증에 납부하지 않습니다. (단, 송부의 인차 및(세물(물과물(연세) 또는 신용카드납부서비스(www.cardtax.or.kr) 참조, 3995) 또는 납부기관으로 이송(지정)되는 0.7% 납부자 부담을 이송하여야 할(영)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-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(총소 납부기간 경과시 9%, 1월 경과시마다 0.02% 추가가산,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6년까지 가산)
 - 납입(영수증)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서 기재일자 이후 금액을 납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납입(영수증)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액의 정액을 즉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
 - 납부세액에 불응한 경우 납부한 납부기간에 8%이내에 불응이자 또는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소 납부신고한 납부분액 8% 이내의 정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.
 - 자세한 납입을 납세할 홈페이지(www.oustore.go.kr) 상세한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.

납부서[수납기관용]

납부서[수납기관용]		납부자	년	월	일
영계번호	증세합산금 일반항목	납부부서			
영계번호		납부기간			
수입징수증 계좌번호	납부서	납기내 납기후			
*수납기관에서는 추의 부를 전 안의 내용을 즉시 정상입력하여 수입징수증서에 전자발사함으로써 불지급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수입신고번호		수입징수증서			
납부자	(대표자)성명	성명	성명		
주 소	주 소	주 소	주 소		
납부세	고율세	고율에너지충당세	개발소비세		
주 세	고율세	고율세	부가가치세		
납어음복합세	가산세(불응이자)	가 산 세	가 산 세		
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	
취급처를 귀하		취급원을 통하여 접수합니다.		영수인	
년		영수인	년	월	일

* 이 납부서(수납기관용) 차관은 세관요구시 세관을 영수필증지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개정안

(별지 제8호 서식)

납부고지서 겸 영수증(납부자용)

(1쪽)

납부고지서 겸 영수증(납부자용)		납부기간	년	월	일
영계번호	증세합산금 일반항목	납부자			
영계번호		납부부서			
수입징수증 계좌번호	납부서	납기내 납기후			
*수납기관에서는 추의 부를 전 안의 내용을 즉시 정상입력하여 수입징수증서에 전자발사함으로써 불지급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수입신고번호		수입징수증서			
납부자	(대표자)성명	성명	성명		
주 소	주 소	주 소	주 소		
납부세	고율세	고율에너지충당세	개발소비세		
주 세	고율세	고율세	부가가치세		
납어음복합세	가 산 세	가 산 세	가 산 세		
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	
납부시 아래 <안내할음>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취급원을 통하여 접수합니다.		영수인	
수입징수증		영수인	년	월	일

- <안내할음>
- 취급처를 납부기관까지 송부, 영수증에 납부하지 않습니다. (단, 송부의 인차 및(세물(물과물(연세) 또는 인차 신용카드납부서비스(www.cardtax.or.kr) 참조, 3995) 또는 납부기관으로 이송(지정)되는 0.7% 납부자 부담을 이송하여야 할(영)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-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(총소 납부기간 경과시 9%, 1월 경과시마다 0.02% 추가가산,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6년까지 가산)
 - 납입(영수증)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서 기재일자 이후 금액을 납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납입(영수증)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액의 정액을 즉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
 - 이 고지세액에 이자가 있으면 이 고지세를 납입 납부분액 8% 이내의 정액을 하거나 납입할 수 또는 납입할 수 할 수 있습니다.
 - 자세한 납입을 납세할 홈페이지(www.oustore.go.kr) 상세한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.

납부서[수납기관용]

납부서[수납기관용]		납부자	년	월	일
영계번호	증세합산금 일반항목	납부부서			
영계번호		납부기간			
수입징수증 계좌번호	납부서	납기내 납기후			
*수납기관에서는 추의 부를 전 안의 내용을 즉시 정상입력하여 수입징수증서에 전자발사함으로써 불지급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수입신고번호		수입징수증서			
납부자	(대표자)성명	성명	성명		
주 소	주 소	주 소	주 소		
납부세	고율세	고율에너지충당세	개발소비세		
주 세	고율세	고율세	부가가치세		
납어음복합세	가 산 세	가 산 세	가 산 세		
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납부할지불	납부할 금액		
취급처를 귀하		취급원을 통하여 접수합니다.		영수인	
년		영수인	년	월	일

* 이 납부서(수납기관용) 차관은 세관요구시 세관을 영수필증지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○ 관세법 시행령 개정('22.2.11.)에 따른 가산세율 변경 내용 반영 등 안내문구 수정

현 행

가산세 등 산출근거

(2쪽)

가산세 종류별	관련 세목	과세표준	산출근거(비율)	가산세
과소신고	일반	관 세	주목지역의 (1%)	원
	부 당(구 정)	내국세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납부지연	관 세	관 세	주목지역의 (1%)	원
	내국세	관 세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무신고	일반	내국세	산출지역의 (1%)	원
	부 정	내국세	산출지역의 (1%)	원
신고지연	일반 품목	관 세	과세표준의 (1%)	원
	현당관세 품목	관 세	과세표준의 (1%)	원
합 계				원
※인신고불이행	관 세	관 세	관세의 (1%)	원
※출세이행	관세내국세	관	체세의 (1%)	원
※과세 등 미신고	휴대물	관세내국세	관	원
	이사용품	관세내국세	관	원
과다한급 가산금	관세 등	관	과다한급금*경과일수의 (1%)	원

개 정 안

가산세 등 산출근거

(2쪽)

가산세 종류별	관련 세목	과세표준	산출근거(비율)	가산세	
과소신고	일반	관 세	원	주목지역의 (1%)	원
		부가가치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계별소비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주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교통에너지환경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교육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부 당(구 정)	관 세	원	주목지역의 (1%)	원
		부가가치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계별소비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주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교통에너지환경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		교육세	원	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(1%)	원
납부지연	관 세	관 세	주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
		주목미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	
	부가가치세	주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	주목미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계별소비세	주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	주목미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주세	주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	주목미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교통에너지환경세	주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	주목미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교육세	주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		주목미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
농특세	주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	
	주목미납지역*경과일수 (1일)의 (1%)	원	원		
무신고	일반	관 세	원	주목지역의 (1%)	원
		부가가치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
		계별소비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
		주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
		교통에너지환경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
		교육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
부 정	관 세	원	주목지역의 (1%)	원	
	부가가치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	
	계별소비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	
	주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	
	교통에너지환경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	
	교육세	원	산출지역의 (1%)	원	
신고지연	일반 품목	관 세	과세표준의 (1%)	원	
	현당관세 품목	관 세	과세표준의 (1%)	원	
합 계				원	
※인신고불이행	관 세	관	관세의 (1%)	원	
※출세이행	관 세	관	관세의 (1%)	원	
※과세 등 미신고	휴대물	관세내국세	관	원	
	이사용품	관세내국세	관	원	
과다한급 가산금	관세 등	관	과다한급금*경과일수의 (1%)	원	

※ 납부지연가산세 이차율 적용기간(관세법 시행령 제39조)
 -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: 22/100,000
 - 2019년 2월 12일 -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: 25/100,000
 - 2019년 2월 11일 이전까지의 기간 : 3/10,000

○ 납세자에게 가산세 산출근거 상세 내역 안내 필요

현행

(별지 제8-1호 서식)

담당부서	○○세관○○과	납세고지(통보)서
담당과장	○○○	
담당자	○○○	
연락처 (전화)	○○○-○○○○	

문서번호 : 세관(3)-과(2)-납세고지 일련번호(5) 시행일자 : 20
수신 : (○○ 관세사무소)
제목 : 납세고지(통보)

1. 귀하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세 등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「관세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9항에 따라 납세고지 하오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가. 납부서번호 : (20 . . .)
나. 세액합계 : 납기내 금액 원정
 납기후 금액 원정
다. 납부기한 : 20 . . 까지
라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
마. 회계연도 : 20 년도
바. 회계구분 : 관세청소관 일반회계
사. 납세의무자 : 주소
 상호
 성명

아. 수입신고번호 : (20 . . .)

2. 만일 납부기한 경과시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금액(납기후 금액)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.025%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(최대 5년) 납부하여야 합니다.

3.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에 의한 납부서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는 수입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○ 세관 수입징수관 직인

개정안

(별지 제8-1호 서식)

담당부서	○○세관○○과	납세고지(통보)서
담당과장	○○○	
담당자	○○○	
연락처 (전화)	○○○-○○○○	

문서번호 : 세관(3)-과(2)-납세고지 일련번호(5) 시행일자 : 20
수신 : (○○ 관세사무소)
제목 : 납세고지(통보)

1. 귀하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세 등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「관세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9항에 따라 납세고지 하오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가. 납부서번호 : (20 . . .)
나. 세액합계 : 납기내 금액 원정
 납기후 금액 원정
다. 납부기한 : 20 . . 까지
라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
마. 회계연도 : 20 년도
바. 회계구분 : 관세청소관 일반회계
사. 납세의무자 : 주소
 상호
 성명

아. 수입신고번호 : (20 . . .)

2. 만일 납부기한 경과시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금액(납기후 금액)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.022%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(최대 5년) 납부하여야 합니다.

3.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에 의한 납부서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는 수입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○ 세관 수입징수관 직인



개정사유

○ 관세법 시행령 개정('22.2.11.)에 따른 가산세율 변경 내용 반영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지 제11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입물품명세서 20</p> <p>선명 : 항목 : 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어종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약내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매인수내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반입물품내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공해조업물품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쿼타조업물품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상기 반입물품 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<u>상위없음</u>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자 상호 : 주소 : 성명 : (인)</p>		어종	수량	단가	금액	비고	계약내역						구매인수내역						반입물품내역						공해조업물품						쿼타조업물품						<p>(별지 제11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입물품명세서 20</p> <p>선명 : 항목 : 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어종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약내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매인수내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반입물품내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공해조업물품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쿼타조업물품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상기 반입물품 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<u>다름 없음</u>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자 상호 : 주소 : 성명 : (인)</p>		어종	수량	단가	금액	비고	계약내역						구매인수내역						반입물품내역						공해조업물품						쿼타조업물품					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	어종	수량	단가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약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매인수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반입물품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해조업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쿼타조업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어종	수량	단가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약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매인수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반입물품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해조업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쿼타조업물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별지 제14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복명서</p> <p>입항일자 : 선명 : B/L NO : 품명 : 수량 : 신고번호 : 화주 : 장치장 :</p> <p>상기물품을 출고시 통관표지 매를 첨부하여 출고하였으므로 별지 배지 매를 첨부 보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보고자 장치장명 : <u>설영인</u> : 확인공무원 : 직위 성명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관장 귀하</p>	<p>(별지 제14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복명서</p> <p>입항일자 : 선명 : B/L NO : 품명 : 수량 : 신고번호 : 화주 : 장치장 :</p> <p>상기물품을 출고시 통관표지 매를 첨부하여 출고하였으므로 별지 배지 매를 첨부 보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보고자 장치장명 : <u>설치·운영인</u> : 확인공무원 : 직위 성명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관장 귀하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문구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별지 제16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통합납부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통합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수리 <u>익일</u>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(통합납부서는 전일 신고수리분에 대하여 <u>익일</u> 아침에 세관장이 발행) 2.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건에 대하여는 개별납부서로 관세 등을 납부하여서는 아니된다(중복납부 방지) 3.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통합납부명세서상 신고번호, 세액 등을 신고수리필증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(납부건수 누락 및 납부세액 상이 방지) 4.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납부기한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납부서로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 (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합납부서 발행이 취소되고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함) <p>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임을 알고 있으며 상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인</p>	<p>(별지 제16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통합납부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통합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수리 <u>다음 날</u>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(통합납부서는 전일 신고수리분에 대하여 <u>다음 날</u> 아침에 세관장이 발행) 2.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건에 대하여는 개별납부서로 관세 등을 납부하여서는 아니된다(중복납부 방지) 3.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통합납부명세서상 신고번호, 세액 등을 신고수리필증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(납부건수 누락 및 납부세액 상이 방지) 4.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납부기한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납부서로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 (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합납부서 발행이 취소되고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함) <p>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임을 알고 있으며 상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인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지 제28호 서식)</p> <p> 임시개청 신청(통보)서</p> <p>문서번호 : xxxxx-개청-xx-xxxx 신청일 : YYY년MM월DD일</p> <p>수신 : xx세관 xxx과장</p> <p>신고자 : (상호) xxxxxxxxx (성명) xxxxx</p> <p>제목 : 임시개청 신청(통보)</p> <p>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통관 임시개청을 신청(통보)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1. 임시개청신청시간 : YYY년MM월DD일 xx시 xx분부터 YYY년MM월DD일 xx시 xx분까지</p> <p>2. 임시개청사유 :</p> <p>3. 임시개청신청 물품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81 1046 920 1214"> <thead> <tr> <th>① 수입 신고번호</th> <th>② 납세 의무자</th> <th>③ 품 명</th> <th>④ 금액 (US\$)</th> <th>⑤포장 개수</th> <th>⑥ 총 중량</th> <th>⑦장치 (예정)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1) 수입신고아니한 건은 ①수입신고번호란에 화물관리번호를 기재</p> <p>(2)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<u>공란</u>으로 둘 수 있으나 ②납세의무자 ③품명 ④장치(예정)장소는 기재</p> <p>* 문서번호체계 : 신고자부호-개청-년도-일련번호</p>	① 수입 신고번호	② 납세 의무자	③ 품 명	④ 금액 (US\$)	⑤포장 개수	⑥ 총 중량	⑦장치 (예정)장소															<p>(별지 제28호 서식)</p> <p> 임시개청 신청(통보)서</p> <p>문서번호 : xxxxx-개청-xx-xxxx 신청일 : YYY년MM월DD일</p> <p>수신 : xx세관 xxx과장</p> <p>신고자 : (상호) xxxxxxxxx (성명) xxxxx</p> <p>제목 : 임시개청 신청(통보)</p> <p>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통관 임시개청을 신청(통보)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1. 임시개청신청시간 : YYY년MM월DD일 xx시 xx분부터 YYY년MM월DD일 xx시 xx분까지</p> <p>2. 임시개청사유 :</p> <p>3. 임시개청신청 물품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65 1046 1704 1214"> <thead> <tr> <th>① 수입 신고번호</th> <th>② 납세 의무자</th> <th>③ 품 명</th> <th>④ 금액 (US\$)</th> <th>⑤포장 개수</th> <th>⑥ 총 중량</th> <th>⑦장치 (예정)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1) 수입신고아니한 건은 ①수입신고번호란에 화물관리번호를 기재</p> <p>(2)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<u>빈칸</u>으로 둘 수 있으나 ②납세의무자 ③품명 ④장치(예정)장소는 기재</p> <p>* 문서번호체계 : 신고자부호-개청-년도-일련번호</p>	① 수입 신고번호	② 납세 의무자	③ 품 명	④ 금액 (US\$)	⑤포장 개수	⑥ 총 중량	⑦장치 (예정)장소														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① 수입 신고번호	② 납세 의무자	③ 품 명	④ 금액 (US\$)	⑤포장 개수	⑥ 총 중량	⑦장치 (예정)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수입 신고번호	② 납세 의무자	③ 품 명	④ 금액 (US\$)	⑤포장 개수	⑥ 총 중량	⑦장치 (예정)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별지 제31호 서식) 대한민국 송품장(제14조 제2항제1호 관련)</p> <p>I. (생략)</p> <p>II. 대한민국 송품장 서식 기재요령</p> <p>1. ~ 3 (생략)</p> <p>4. Consignee / <u>수하인</u>의 상호 및 주소 기재</p> <p>5. Buyer(if other than consignee) / 구매자 상호 및 주소 기재</p> <p>* 구매자와 <u>수하인</u>(4번항목)이 서로 다른 경우에 기재</p> <p>8. Transport details / 국제운송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 기재</p> <p>① ~ ⑧ (생략)</p> <p>⑨ Freight payment method / <u>운임지불방법</u>(선불 또는 후불 여부)</p> <p>9.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/ 물</p>	<p>(별지 제31호 서식) 대한민국 송품장(제14조 제2항제1호 관련)</p> <p>I. (현행과 같음)</p> <p>II. 대한민국 송품장 서식 기재요령</p> <p>1. ~ 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/ <u>물품수신인</u>----- ---</p> <p>5. ----- -----</p> <p>* ----- <u>물품수신인</u>----- -----</p> <p>8. ----- -----</p> <p>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<u>지급</u>----- -----</p> <p>9. -----</p>	<p>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문구 정비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품인도조건 및 대금지불조건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 기재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/ 대금지불 조건 기재</p> <p>10. ~ 12. (생략)</p> <p>13. Total amount of price</p> <p>지불통화 부호 및 전체물품가격을 기재</p> <p>14-16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</p> <p>14. ~ 15. (생략)</p> <p>16. Instruction or Information for payment</p> <p>대금지불관련 공지사항 또는 추가 통지 내용을 임의적으로 기재</p>	<p>-----<u>지급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<u>지급</u>-----</p> <p>10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-----</p> <p><u>지급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4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u>지급</u>-----</p> <p>-----</p>	
<p>(별지 제31-1호)</p> <p>4. Consignee / 수하인 상호 및 주소</p>	<p>(별지 제31-1호)</p> <p>4. Consignee / 물품수신인 상호 및 주소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
<div data-bbox="174 284 824 325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5. Buyer(if other than consignee) / 구매자 상호 및 주소(수하인과 다른 기재)</div> <div data-bbox="174 368 824 41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9.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/인도 및 지불 조건</div> <div data-bbox="174 443 824 485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/대금지불 조건 및 사정</div> <div data-bbox="174 518 465 56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Freight payment Method /운임지불방법</div> <div data-bbox="174 608 360 649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Currency code /지불통화부호</div> <div data-bbox="174 699 730 74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16. Instruction or Information for payment / 지불관련 공지사항 또는 추가 통지내용</div>	<div data-bbox="958 284 1608 325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5. Buyer(if other than consignee) / 구매자 상호 및 주소(물품수신인과 다른 기재)</div> <div data-bbox="958 368 1608 41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9.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/인도 및 지급 조건</div> <div data-bbox="958 443 1608 485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/대금지급 조건 및 사정</div> <div data-bbox="958 518 1249 56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Freight payment Method /운임지급방법</div> <div data-bbox="958 608 1144 649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Currency code /지급통화부호</div> <div data-bbox="958 699 1514 74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16. Instruction or Information for payment / 지급관련 공지사항 또는 추가 통지내용</div>	정비 기준 반영																		
(별지 제31-2호)	(별지 제31-2호)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항목 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항목명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Consignee(수하인) - 수하인 상호 - 수하인 주소</td> <td>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</td> <td>Transport details[운송내역] - Mode of transport(운송방법) - Vessel name(선박명·항공편명) - Voyage No(항차번호) - Departure date(출항일자) - Place of loading(선적지) · 선적지 코드 · 선적지명 - Place of discharge(양륙지)</td> <td>선박(또는 항공기)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 코드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명 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목 번호	항목명	비고	1	Consignee(수하인) - 수하인 상호 - 수하인 주소	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	8	Transport details[운송내역] - Mode of transport(운송방법) - Vessel name(선박명·항공편명) - Voyage No(항차번호) - Departure date(출항일자) - Place of loading(선적지) · 선적지 코드 · 선적지명 - Place of discharge(양륙지)	선박(또는 항공기)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 코드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명 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항목 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항목명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Consignee(물품수신인) - 물품수신인 상호 - 물품수신인 주소</td> <td>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</td> <td>Transport details[운송내역] - Mode of transport(운송방법) - Vessel name(선박명·항공편명) - Voyage No(항차번호) - Departure date(출항일자) - Place of loading(선적지) · 선적지 코드 · 선적지명 - Place of discharge(양륙지)</td> <td>선박(또는 항공기)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 코드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명 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목 번호	항목명	비고	1	Consignee(물품수신인) - 물품수신인 상호 - 물품수신인 주소	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	8	Transport details[운송내역] - Mode of transport(운송방법) - Vessel name(선박명·항공편명) - Voyage No(항차번호) - Departure date(출항일자) - Place of loading(선적지) · 선적지 코드 · 선적지명 - Place of discharge(양륙지)	선박(또는 항공기)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 코드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명 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	○ 관세법령상 용어로 문구 정비
항목 번호	항목명	비고																		
1	Consignee(수하인) - 수하인 상호 - 수하인 주소	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																		
8	Transport details[운송내역] - Mode of transport(운송방법) - Vessel name(선박명·항공편명) - Voyage No(항차번호) - Departure date(출항일자) - Place of loading(선적지) · 선적지 코드 · 선적지명 - Place of discharge(양륙지)	선박(또는 항공기)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 코드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명 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																		
항목 번호	항목명	비고																		
1	Consignee(물품수신인) - 물품수신인 상호 - 물품수신인 주소	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업명칭 해당 기업의 주소																		
8	Transport details[운송내역] - Mode of transport(운송방법) - Vessel name(선박명·항공편명) - Voyage No(항차번호) - Departure date(출항일자) - Place of loading(선적지) · 선적지 코드 · 선적지명 - Place of discharge(양륙지)	선박(또는 항공기)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 코드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명 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		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	개정사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양륙지 코드 · 양륙지명 - Place of delivery(인도장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도장소 코드 · 인도장소명 - Place of transshipment(환적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적지 코드 · 환적지명 - Freight payment Method(운임지불방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양륙지 코드 · 양륙지명 - Place of delivery(인도장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도장소 코드 · 인도장소명 - Place of transshipment(환적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적지 코드 · 환적지명 - Freight payment Method(운임지불방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양륙지 코드 · 양륙지명 - Place of delivery(인도장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도장소 코드 · 인도장소명 - Place of transshipment(환적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적지 코드 · 환적지명 - Freight payment Method(운임지급방법) 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	
9	Terms of delivery and payment[인도 및 지불 조건] 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(무역 거래조건 부호 및 지역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ncoterms value - Location name 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(대금지불 조건 및 사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ayment terms - Payment conditions 	Buyer와 Seller 협의한 조건	Terms of delivery and payment[인도 및 지급 조건] 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(무역 거래조건 부호 및 지역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ncoterms value - Location name 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(대금지급 조건 및 사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ayment terms - Payment conditions 		Buyer와 Seller 협의한 조건
13	Total amount of price[전체 물품가격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urrency code(지불통화부호) - Total amount(금액) 		Total amount of price[전체 물품가격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urrency code(지급통화부호) - Total amount(금액) 		
16	Instruction or Information for payment[지불 관련 공지사항 또는 추가 통지내용]		Instruction or Information for payment[지급 관련 공지사항 또는 추가 통지내용]		